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4. 3.(금) 총 5매(본문 3)	
담당 부서	지역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한정희, 사무관 임유현, 주무관 서민지 • ☎ (044) 201-3669, 3670	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월 5일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맞춤형 지역개발사업 지원한다

-국토부, 2020년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추진
-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접수...7월 중 25개소 선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‘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’을 추진한다.

- 정부는 그간(’15~’19년)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. 올해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.

□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ⁱ⁾투자선도지구, ⁱⁱ⁾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.

- ⁱ⁾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,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·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지역에 따라 건폐율·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·부담금 감면,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.
- ⁱⁱ⁾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·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*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.

* 생활환경·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,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 하여 행자부·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·고시한 70개 시·군(’19.9월 재지정)

-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 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투자선도지구의 경우, 개별 시·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하여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.
-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의 경우, ‘일과 삶의 균형’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‘관광사업’을 중점 육성하고자 한다.
-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·군의 단일 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*가 있었다.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·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·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자 한다.
- '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4.6(월)부터 5.8(금)까지 접수를 받고,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(서면→현장→종합)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“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”이라면서,
 - “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 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임유현 사무관 또는 서민지 주무관(☎ 044-201-3669, 36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투자선도지구의 정의

-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, 인센티브,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

⇒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, 민간투자를 활성화

※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

-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구

□ 지정대상 및 유형

- (대상) 수도권·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대상

* 예시 : 산업단지, 물류·유통단지, 관광단지, 관광휴양시설, 역세권 등

- (요건) ①교통 등 기반시설, ② 성장 잠재력, ③일정규모 투자·고용 창출, ④인근 파급효과, ⑤지역생활 거점, ⑥민간투자 가능성

*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

- (유형) 낙후지역(성장촉진지역·특수상황지역)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, 거점지역(낙후지역 외 거점지역)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

<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주요혜택 >

유형	발전촉진형	거점육성형
대상지역	낙후지역(성장촉진·특수상황지역)	낙후지역 외 지역
투자·고용	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	1,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
주요혜택	재정지원(도로, 주차장 등 기반시설)	재정지원(도로, 주차장 등 기반시설)
	조세감면(법인세, 소득세 등)	-
	규제특례(건폐율·용적률 완화, 특별건축구역, 인허가의제 65개 등)	
	자금지원(지자체)	
	인허가 지원 등	

* 필요시,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·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

□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정의

- 성장촉진지역 사업 중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융·복합 사업

* 사업예시 : 지역산업, 지역경관, 지역생활 복지, 지역관광·체험 등

□ 지정대상 및 유형

- (대상) 성장촉진지역*으로 지정된 70개 시·군

* 생활환경·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,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·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·고시한 시·군('19.9월 재지정)

- (유형) 성장촉진지역 전체대상의 '일반형'과 성장촉진지역 중 지역 활성화 지역*만 공모가능 한 '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**'으로 구분

* 「지역개발법」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지정('15.3 지정고시, 22곳에 대해 10년 기간)

** 사업예시 :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공간 정비, 고령자 보행로 정비 등

- (지원) 일반형은 사업당 최대 20억, 고령친화형은 2억원 지원

- 체류형 관광 사업은 연계 시·군당 20억을 지원하여 최대 60억까지 지원하며, 사업 준비단계부터 상시 컨설팅 지원

구 분	일반 사업	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
대상 지자체	·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·군 대상('19.9월 지정)	·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22개 시·군 대상('15.3월 지정)
지원 규모	· 최대 20억원 (체류형관광사업은 2개시·군연계시 40억, 3개 시·군이상 연계시 60억)	· 최대 약 2억원

□ (절차) 공모접수 → 사전평가(시·도) → 서면·현장 종합평가*(국토부) → 선정

*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, 종합평가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